

형사재판이 아닌 재판상황을 보적 할 때 관련자의 성명을 감춰주어야

연방대법원 1987, 11. 24 판결 -VI ZR 42/87 사건 -(원심 법원 Cello 고등법원)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판시사항

흥미위주의 기사를 주로 취급하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게재되면, 이는 특히 명예를 훼손하는 효과가 큰 점을 참작하여, 언론기관은, 형사재판이 아닌 재판상황을 보도함에 있어서도 역시, 독자들로 하여금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실개요

원고는 1985년에 H 공업 및 상업위원회의 임시책임자로서 그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5년 3월 그는 그의 집무실에서, 어느 여자와 성적인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를 그의 여자직원이 도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그 책임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즉시 원고는 유예기간도 없이 해고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고용주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노동법원에서의 그 소송에서 1985, 416. 원고에 대하여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하며, 또한 원고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 졌다. 그런데 피고가 발간하는 「Bild」 신문의 1985. 4. 17자 판에, 『전화로 하는 사무실 sex 해고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위 사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또한 역시 피고가 발간하는 1985. 5. 5. 자 「일요판 Bild」 신문에 『회사의 전화 어느 내용의 통화만이 허용되는가』라는 제목 하에 역시 위 사건에 관한 보도가 행해졌는 바, 위 각 기사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위 원고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기사로 인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요청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문기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다. 지방법원은 위 소를 기각하였다. 항소법원에서 원고는 1985년 및 1986년도에 발생한 수익상실손해로서 24,652DM을 주장하면서 위 금액과 위자료의 지급청구 이외에 198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의 확인을 구하였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위 소송을 근본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지급 의무의 범위 및 확인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피고의 상고는, 위 확인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환송판결이 내려진 범위에 있어서만, 상고로서 판단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판결이유

I

항소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위 2가지의 문제로 된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내적인 영역이 일반공중에게 부당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위 피고 출판사로부터, 원칙적으로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 제 831 조, 제 8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 및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금전에 의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액수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아직 심리가 덜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사건을 일괄해서 독일 민사소송법 제 538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항소법원으로서, 원고가 그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한, 항소심의 절차에서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확인의 소로부터, 이행의 소로 변경해간 사정 및 이 사건 확인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이 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의 점에 있어서 모두 판결될 수 있으리라는 고려는 모두 위 환송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II

상고는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고, 그리하여 이 사건 판결은 취소되었고, 그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된 절차상의 책문권 즉 이 사건은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지방법원으로 환송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III

이 사건은 독일민사소송법 제 565 조 제 1 항에 의하여 항소법원으로 환송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실적인 점에 관하여 좀더 많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상고이유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일민사소송법 제 565 조 제 3 항 제 1 호에서 규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판결을 하기에는 즉 이 사건 소를 기각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당 법원은, 피고들의 상고가, 원고의 지급청구권에 관련된 책임인정의 판결에 반대하고 있는 범위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럼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된다는 점에 있어서, 항소법원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피고는 신문의 기사가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원고의 내적 영역을 위법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이다(BGHZ 73, 120, 124: Senatsurteil von 20. Januar 1981-VI ZR 163/79-Vers R1981. 384, 38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행동이 문제로 되고 있다는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항소법원이 적절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에 관한 문제가 가지는 내면적인 성격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관련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적인 의사표시가 그의 사무실에서 행해졌다 하여 그로써 바로 그 내면적인 면이 보호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이 그의 사무실에서 성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그로써 그의 성생활을 그의 직업에 관련된 공중에게 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의 원고에게 있어서는 발견되지 아니 한다.

노동 법원의 공개된 법정에서 이 사건이 심리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의 신문이 이러한 내용을 공표하게 되었다 하여, 그로써,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내적인 영역에 대한 신문보도의 한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의 공중은, 이러한 종류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의 그의 성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파면 당한 사람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관청의 지도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정보를 얻는 데에 상당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사가 공표되게 되면, 자연히 피해자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 되므로,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과 같이 형사상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법정절차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독자들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으로서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Bild」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업 및 그 직장의 소재지(H 산업 및 상업회사의섭외부장)가 전부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나이(38 세)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에서는 이를 문제로 삼지도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가 원고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는 「Bild am Sonntag」 신문에 실린 기사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위 「Bild am Sonntag」 신문에서의 직업의 표시 및 완전한 장소의 표시(H 산업 및 상업회사의 부장)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아주 적은 범위의 독자들에게 대하여서만 원고라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신문의 독자층이 위 「Bild」 신문의 독자층과 부분적으로 서로 겹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Bild am Sonntag」 신문에의 보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전의 기사가 원고에 대한 것이었구나 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전지식을 자극하게 되고, 원고의 위 사건은 「Bild」 신문에 기사가 게재된 지 2 주일 반 후에 게재된 이 기사로 인하여 다시 한번 독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원고의 내적 영역에 대한 침해가 한층 더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2 신문의 발행자인 피고로서는, 고려에 넣었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주장하였고, 그리고 그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청구 자체는 이유가 있음이 확정된 지급청권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장래의 손해에 관련되는 확인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침해행위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소법원으로서, 사실적인 관점에서, 독일민사소송법 제 256 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아갈 원고의 손해가 1987. 1. 1 이후의 시점에 대하여도 역시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및 존재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존재한다고 할 것인지의 점을 좀더 심리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